

2024학년도 전기 대학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일반대학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과정	모집학과	수료학점	모집인원
공학	석사과정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7학점 (연구학점 포함)	20

※ 메카트로닉스공학과는 기계기술과 전기·전자·컴퓨터·제어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기계전자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IT융복합 분야이며, 대경권 기술 혁신을 선도할 메카트로닉스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기계시스템전공, 지능형자동차공학전공, IT융복합기술전공으로 교육과정을 전문화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함

2. 전형일정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23. 12. 06(화) ~ 12. 15(금) 16:00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사무실	인터넷 접수 (제출서류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사무실 접수)

3. 지원자격

구분	재교육형	재교육형 동시채용
참여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통주점업, 무도 유통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핑업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참여학생 자격	<u>학기 개시일 기준</u> 으로 해당 기업에 <u>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u>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지원 가능)	<u>학기 시작과 동시에</u> 해당 기업에 <u>취업한 근로자</u>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 전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학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의무근무	학위취득 후 1년	학위취득 후 2년
운영형태	야간, 주말 과정으로 운영	
교육기간	2년 (4학기)	

-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학생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위의 참여학생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재교육형 동시채용 참여학생은 근로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에 근로한 경력이 없어야 함
- ※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참여기업(7년 이내)의 대표자는 교육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참여할 수 있음
- ※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함
- ※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참여 학생의 의지와 관계없는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의 사유에 의한 퇴사일 경우에는 예외)
-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라 참여학생 자격을 판단하는 학기 개시일은 봄학기 3월 1일, 가을학기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학기 개시일은 경일대학교 대학원 학사일정을 준수함

4. 전형방법

구분	학과	서류전형	면접고사	총점
석사과정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00	100	200

5. 선발방법

- 가. 모집인원에 따라 입학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나.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학생 및 기업 선발)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 다. 지원자의 학력이 현격하게 낮아 면접위원 과반수가 수학불능자로 판정할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미등록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예비후보자 중에서 입학전형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6. 등록금 및 장학제도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기준 등록금을 적용하며, 입학 유형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지급 (기준 등록금 : 교육부가 공시하는 전국대학의 전년도 평균 등록금과 최근 3년간 등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책정한 등록금)

재교육형		재교육형 동시채용
중소 기업	정부지원금 65% (나머지는 기업, 학생부담)	정부지원금 100%
중견 기업	정부지원금 40% (나머지는 기업, 학생부담)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3천억 이상의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없음	
[예시] 2023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기준등록금 3,020,000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금(65%) 1,963,000원 기업부담금(17.5%) 528,500원 학생부담금(17.5%) 528,500원	정부지원금(100%) 3,020,000원

7. 우대사항

- 가. 재교육형 참여학생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 상향한다. 단, 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 상향한다.
 - ①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 ②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 ③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과제 참여 근로자
 - ④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 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⑥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⑦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⑧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⑨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나.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기업이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신청 시 금리 우대 할 수 있다.

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지원자 전체 (공통)	입학원서 1부(사진첨부)	첨부서식
	주민등록표초본 1부 (병역사항 기재)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대학성적증명서 1부 (만점평점, 취득평점 기재)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만 해당, sminfo.smba.go.kr 에서 발급)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중견기업만 해당)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별지 제6호의 붙임
	재직증명서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원천징수 영수증 1부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1부	첨부서식
	법인의 국세납세증명서 1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정부 민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가능)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3자 계약서 3부	별지 제10호
재교육형 동시채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1부	별지 제7호
	3자 계약서 3부	별지 제11호
	중소기업 계약학과 근로계약서 1부	별지 제11호의 붙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9. 참여기업 자격요건 참고사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학생 및 기업 선발) 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할 수 없다.

- 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나.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다.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라.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학기 개시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은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마.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 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전형료

80,000원 ※ 납부계좌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11. 기타

- 가. 입학원서는 접수마감일 16:00 이내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함
- 나.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함
-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메카트로닉스공학과(☎053-600-5340)로 문의 바람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 제출서류 양식

일반대학원 입학원서

2024학년도 전기

지망학과 및 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석사과정 <input type="checkbox"/> 박사과정	수험번호	※
-----------	-----------------	--	------	---

지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원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자택)	H·P)	사 진 (3cm × 4cm)
자	이메일)			
	학사	년 월	대학교 학부(과)	
력	석사	년 월	대학교 학부(과)	대학원 전공(<input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졸업예정)
	학사학위 등록번호		석사학위 등록번호	

병역 관계	미필	<input type="checkbox"/> ①제1국민역 <input type="checkbox"/> ②병역면제	병역필	<input type="checkbox"/> ③예비역	계급()	<input type="checkbox"/> ④현역
				. . . 입대 . . . 제대	<input type="checkbox"/> 육군 <input type="checkbox"/> 해군 <input type="checkbox"/> 공군 <input type="checkbox"/> 해병	

경 력	기관명	근무기간	기관명	근무기간
		. . ~ ~ . .
		. . ~ ~ 현재

직 장	직장명	부서	직위	
	담당자 성명	담당자 직위	담당자 이메일	R&D 연구인력 명

귀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3년 월 일

지원자 (서명/인)

경일대학교 총장 귀하

접수번호	※
전형료수납인	

- ※는 기입하지 말 것.
- 우편번호를 제외한 □는 해당란에 ■할 것.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기 업 규 모	<input type="checkbox"/> 중 소 기 업 <input type="checkbox"/> 중 견 기 업
소 재 지			
주 요 생 산 품		표 준 산 업 분 류	※예) 금속열처리업, 철강선 제조업 등 상세 분류 작성
자 본 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4 대 보 험 가 입 여 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상 근 로 자 수	명
업 무 담 당 자	부서명		연 락 처
	성 명		F A X
참 여 회 망 근 로 자	성 명		지 원 학 과
	성 명		지 원 학 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만 해당, sminfo.smta.gov.kr에서 발급)
 3.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각 1부(중견기업만 해당)
 4.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5.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경일대학교 총장 귀하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성 명		생 년 월 일	
지 원 학 과		연 락 처	
근 무 부 서		재 직 기 간 (개 월)	(년 월 일 ~ 현재)
직 위		담 당 업 무	

<추천사유>

교육과정과 추천대상자의 직무 간 상호 연관성(현재 또는 향후)

학위과정 수료이후 추천대상자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

기타 위 사람을 추천한 특별한 사유

위 사람을 2024학년도 경일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3.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가능) 1부

대표자 : (인)

경일대학교 총장 귀하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소 재 지			
주 요 생 산 품		표준산업 분류	<i>※예) 금속열처리업, 철강선체 조업 등 상세 분류 작성</i>
자 본 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4 대 보 험 부 가 입 여 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상시 근로자수	명
채 회 망 인 용 원	명	채용희망 분야	
업 무 담 당 자	부서명	연락처	
	성 명	FAX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만 해당, sminfo.smba.go.kr에서 발급)
- 3.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각 1부(중견기업만 해당)
- 4.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 5.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경일대학교 총장 귀하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 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은 아래 등록금 부담비율에 따라 산출된 등록금 부담금액을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등록금 부담비율 (100%)	정부보조비율 %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 부담비율 %	참여학생 부담비율 %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1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학위과정지원)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학위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고지의무)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학생을 제재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금 반환)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붙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관대학의 장”	경 일 대 학 교	총 장	정 현 태 <u>(서명/날인)</u>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u>(서명/날인)</u>
“참여학생”	○ ○ ○ (주)		○ ○ ○ <u>(서명/날인)</u>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학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한 학생선발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학력)

보유 · 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전담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관리·운영,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및 학번, 출석 등 학적사항 전반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학생) :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기업) :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3조(채용의무) ①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학기 개시일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참여학생”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제시한 고용조건을 과도하게 변경할 경우 “참여학생”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3자 계약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제2항의 해약 요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최소 2년 간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2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등록금의 반환 등)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8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 붙임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중소기업계약학과 근로계약서 1부.

“주관대학의 장”	경 일 대 학 교	총 장	정 현 태 <u>(서명/날인)</u>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u>(서명/날인)</u>
“참여학생”	○ ○ ○ (주)		○ ○ ○ <u>(서명/날인)</u>

「중소기업 계약학과」 근로계약서 (예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한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3조제2항과 3자 계약서에 따라 의무근무 실시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계약합니다.

가. “참여기업”은 “참여학생”에 고용형태,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등에 대해 아래에 제시한 조건에 따라 채용한다.

구 분	내용
고용 형태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연 봉	
직무내용	
복지혜택	
:	

나. “참여기업”이 위의 고용조건을 “참여학생”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변경할 경우 “참여학생”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3자 계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참여학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 취업하며 성실히 의무근무에 임한다.

라. 본 확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운영지침과 3자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서 명)

“참여학생” ○ ○ ○ (서 명)

경일대학교 총장 귀하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 당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상태인가?
(징수유예는 제외)

(예, 아니오)

2. 신청일 현재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신청일 현재 파산, 워크아웃, 기업 및 대표(이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가?

(예, 아니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첨부 1. 법인의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